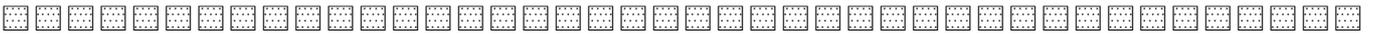


컨테이너선 랫싱브리지에서 추락에 의한 사망



< 재 해 개 요 >

2013년 2월 7일(목) 14시 23분경 경남 거제 소재 조선소 안벽의 □□□□호선에서 하청업체 △△기업의 재해자가 소속된 작업반 근로자 5명이 호선의 7번 홀드(Hold)에 크레인을 이용한 해치커버(Hatch Cover) 설치과정에서, 재해자가 호선의 랫싱브리지(Lashing Bridge)에서 아래 홀드바닥으로 추락·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한 사고임.

□ 사고형태 및 피해정도 : 추락 / 사망 1명

□ 사고발생원인

○ 랫싱브리지 난간 구조 불량

- 랫싱브리지는 선박 구조물로서, 랫싱브리지 3단, 4단의 전체길이에서 셀가이드가 난간기둥 역할을 하며, 중간대가 삼지창 모양으로 되어 일부 구간에서는 신체가 빠질 위험이 있으나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.

○ 안전대 미체결

- 해치커버 줄잡이 작업을 위해 난간의 구조가 안전하지 않은 랫싱브리지를 이용할 때에 재해자가 안전대를 휴대하였음에도 이를 선박 구조물에 체결하지 않음.

□ 재해예방 안전대책

○ 랫싱브리지 난간 중간대 추가 설치

- 완성된 랫싱브리지 난간이 삼지창 모양으로 되어, 신체가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치커버 줄잡이 작업 등 여타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출입할 경우에는 랫싱브리지 3단, 4단에 추가 중간대를 설치하는 등 추가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.

○ 안전대 체결 철저

- 완성된 선박 통로라 하더라도 해치커버 줄잡이 작업을 위해 난간의 구조가 안전하지 않은 랫싱브리지에 출입을 할 경우 작업자는 안전대를 휴대하고 선박 구조물의 안전한 곳에 안전대를 체결하여야 함.



본 속보는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조선업재해예방팀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종 시설의 자체점검 및 적절한 조치실시, 근로자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바랍니다.

인터넷 주소 www.kosha.or.kr/사업안내/산업안전/조선업 기술지원/중대재해속보 클릭